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8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장철민·백승아·김한규

진선미 • 이춘석 • 이기헌

박정현 · 조승래 · 장종태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

또한, 형제자매가 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부모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 복귀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가 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규정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2. 심리 상담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 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운영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12조제 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3(피해자 가정 복귀 지원) ①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 피해자를 상담·치 료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가정 복귀가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피

해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성폭력행위자(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위자를 말한다)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 그 성폭력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의4(가정 복귀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3제2항 본문에 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폭력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기관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생 략) 취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 해자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 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 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 및 정 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② ~ ④ (생 략) 항까지와 같음)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 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용 지원) ① -----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 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 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 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 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 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 지 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제 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 원 공동생활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 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 한 피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피해자 가정 복귀 지원) ①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피해자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신 설>

<신 설>

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 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 피해 자를 상담ㆍ치료한 의사 등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가정 복 귀가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피 해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성폭력행 위자(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행 위자를 말한다)와 동거하게 되 는 경우 그 성폭력행위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 •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의4(가정 복귀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17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 른 확인 결과 성폭력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기 관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피해자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재 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 문에 따른 의견을 듣지 아니하 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 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할 수 있다.